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33호 2015. 7. 1. (수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68호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069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하동군 조례 제2070호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9
○ 하동군 조례 제2071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하동군 조례 제207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하동군 조례 제2073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하동군 조례 제2074호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23
○ 하동군 조례 제2075호	하동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27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30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2
○ 하동군 규칙 제1131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3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4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93차)	65
--------------------	-----------------	----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33호 2015. 7. 1. (수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68호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069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하동군 조례 제2070호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9
○ 하동군 조례 제2071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하동군 조례 제207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하동군 조례 제2073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하동군 조례 제2074호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23
○ 하동군 조례 제2075호	하동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27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30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2
○ 하동군 규칙 제1131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3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4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93차)	65
--------------------	-----------------	----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433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5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068 호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 관하여”를 “에”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4호 및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9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 5호, 제6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8.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제6호, 제7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에 관하여”를 “에”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자에 대해서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운용에 관하여는”을 “운용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삭제한다.

제22조 중 “에 관하여”를 “에”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입 장 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1,000	5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1,500	1,0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2,000	1,500	2,600	2,000

※ 개별권 : 최첨관택을 입장하는 경우

※ 통합권 : 최첨관택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4) 제 433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최champ관택 관리·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최champ관택</u>"이라 함은 최champ관택, 평사리문학관, 드라마촬영장 안에 있는 토지, 건물과 전시물품, 담장, 조경수목·전통한옥 체험관,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등을 말한다. 2. "<u>입장료</u>"라 함은 유료입장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u>사용료</u>"라 함은 공개 관람의 숙박, 행사장, 촬영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4. "<u>판매시설</u>"이라 함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u>어린이</u>"라 함은 초등학생과 <u>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자</u>를 말한다. 6. "<u>청소년</u>"이라 함은 <u>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u>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7. "<u>군인</u>"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수경 이하의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말한다. 8. "<u>어른</u>"이라 함은 <u>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자</u>로서 제6호, 제7호 이외의 자를 말한다. 9. "<u>단체</u>"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p>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 ① (생략) ② 제1항의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champ관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뜻</u>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최champ관택</u>"이란 최champ관택, 평사리문학관, 드라마촬영장 안에 있는 토지, 건물과 전시물품, 담장, 조경수목·전통한옥 체험관,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등을 말한다. 2. "<u>입장료</u>"란 유료입장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u>사용료</u>"란 공개 관람의 숙박, 행사장, 촬영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4. "<u>판매시설</u>"이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u>어린이</u>"란 초등학생과 <u>8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u>을 말한다. 6. "<u>청소년</u>"이란 <u>14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u>과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7. "<u>군인</u>"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수경 이하의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말한다. 8. "<u>어른</u>"이란 <u>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u>으로서 제6호, 제7호 이외의 <u>사람</u>을 말한다. 9. "<u>단체</u>"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p>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u>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제9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지참한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자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7. 하동군민.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지참한 자
8.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
9. (생 략)

제13조(관란거부 또는 퇴관) (생 략)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생 략)

제16조(위탁관리운영) ① (생 략)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④ (생 략)

⑤ 위탁 여건상 공개 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의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지참한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7. 하동군민.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지참한 사람
8.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9.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란거부 또는 퇴관) (현행과 같음)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생 략)

제16조(위탁관리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용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④ (생 략)

<삭 제>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 동 군 공 보

(6) 제 433 호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입 장 료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30%;">구 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요 금</th> </tr> <tr> <th style="width: 15%;">개 인</th> <th style="width: 15%;">단 체</th> </tr> </thead> <tbody> <tr> <td>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r> <tr> <td>청소년(13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제복 입은 하사관 이하 군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td> </tr> <tr> <td>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r> </tbody> </table> <p>※ 단체 : 20명 이상</p>	구 분	요 금		개 인	단 체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600	400	청소년(13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제복 입은 하사관 이하 군인)	800	6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1,000	800	<p>[별표 1] <u>입 장 료</u>(제7조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rowspan="3" style="width: 30%;">구 분</th>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요 금</th> </tr>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개 별 권</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통 합 권</th> </tr> <tr> <th style="width: 15%;">개 인</th> <th style="width: 15%;">단 체</th> <th style="width: 15%;">개 인</th> <th style="width: 15%;">단 체</th> </tr> </thead> <tbody> <tr> <td>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r> <tr> <td>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td> </tr> <tr> <td>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body> </table> <p>※ 개별권 : 최참관택을 입장하는 경우 ※ 통합권 : 최참관택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p>	구 분	요 금				개 별 권		통 합 권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1,000	5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1,500	1,0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2,000	1,500	2,600	2,000
구 분		요 금																																									
	개 인	단 체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600	400																																									
청소년(13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제복 입은 하사관 이하 군인)	800	6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1,000	800																																									
구 분	요 금																																										
	개 별 권		통 합 권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1,000	5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1,500	1,0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2,000	1,500	2,600	2,000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5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69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에게는 관람료”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과학관 관람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20명 이상)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600	4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800	6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1,000	800	2,600	2,000

※ 개별권 : 지리산생태과학관을 관람하는 경우

※ 통합권 : 지리산생태과학관과 최참관댁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하 동 군 공 보

(8) 제 433 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에 대해서</u>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8. (생 략) ②. (생 략)</p> <p>[별표] 과학관 관람료(제8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금 액</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개 인</th> <th>단 체 (20명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어 른</td> <td>1,000</td> <td>800</td> <td>만9세 이상 ~ 만65세 미만</td> </tr> <tr> <td>청소년</td> <td>800</td> <td>600</td> <td>만2세 이상 ~ 만9세 미만</td> </tr> <tr> <td>어린이</td> <td>600</td> <td>400</td> <td>만6세 이상 ~ 만2세 미만</td> </tr> </tbody> </table> <p>※ 하동군민 : 관람료 면제</p>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어 른	1,000	800	만9세 이상 ~ 만65세 미만	청소년	800	600	만2세 이상 ~ 만9세 미만	어린이	600	400	만6세 이상 ~ 만2세 미만	<p>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에게는</u>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u>과학관 관람료</u>(제8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3">구 분</th> <th colspan="4">요 금</th> </tr> <tr> <th colspan="2">개별권</th> <th colspan="2">통합권</th> </tr> <tr> <th>개인</th> <th>단체 (20명 이상)</th> <th>개인</th> <th>단체 (20명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td> <td>600</td> <td>400</td> <td>1,400</td> <td>800</td> </tr> <tr> <td>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td> <td>800</td> <td>600</td> <td>2,000</td> <td>1,400</td> </tr> <tr> <td>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td> <td>1,000</td> <td>800</td> <td>2,600</td> <td>2,000</td> </tr> </tbody> </table> <p>※ 개별권 : 지리산생태과학관을 관람하는 경우 ※ 통합권 : 지리산생태과학관과 최참관댁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p>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20명 이상)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600	4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800	6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1,000	800	2,600	2,000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어 른	1,000	800	만9세 이상 ~ 만65세 미만																																												
청소년	800	600	만2세 이상 ~ 만9세 미만																																												
어린이	600	400	만6세 이상 ~ 만2세 미만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20명 이상)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600	4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800	6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1,000	800	2,600	2,000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5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70호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 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 동 군 공 보

(10) 제 433 호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5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71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바.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해안개발과, 규제개혁추진단을”을 “산단조성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산단조성과
 - 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 다.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라.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보상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3의 산단조성과는 2018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남해안개발과”를 “산단조성과”로 한다.

②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남해안개발과장”을 “산단조성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생략)</p> <p>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기획감사실</p> <p>가. ~ 라. (생략)</p> <p><신설></p> <p><신설></p> <p>2. ~ 13. (생략)</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u></p> <p>바. <u>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u></p> <p>2. ~ 13.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3(한시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청 내에 한시기구로 <u>남해안개발과, 규제개혁추진단</u>을 둔다.</p> <p>1. <u>남해안개발과</u></p> <p>가. <u>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업무 총괄 기획·조정</u>에 관한 사항</p> <p>나. <u>경제자유구역 개발 총괄 기획·조정</u>에 관한 사항</p> <p>다. <u>삭제</u></p> <p>라. <u>경제자유구역 및 남해안 개발에 따른 배후도시 조성</u>에 관한 사항</p> <p>마. <u>경제자유구역 및 남해안 개발 보상</u>에 관한 사항</p> <p>2. <u>규제개혁추진단</u></p> <p>가. <u>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u></p>	<p>제3조의3(한시기구) -----</p> <p>-----<u>산단조성과를</u>-----</p> <p>-----.</p> <p>1. <u>산단조성과</u></p> <p>가. <u>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총괄 기획·조정</u>에 관한 사항</p> <p>나. <u>경제자유구역 개발</u>에 관한 사항</p> <p>다. <u>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조성</u>에 관한 사항</p> <p>라. <u>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보상</u>에 관한 사항</p> <p><삭제></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5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7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27명”을 “63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14명”을 “621명”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1명(5급)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하 동 군 공 보

(14) 제 433 호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34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03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65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6조 관련)

관 리 기관별	부서명	구 분		정원 (명)	존속기한	비 고
		직 종	직 급			
본청	산단조성과	일반직	5급	1	2018. 6. 30.	6급 정원 환원

하 동 군 공 보

(16) 제 433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27명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14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634명 ----- ----- 1. ----- : 621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627	-							총 계		634	-						
정무직 계		1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596	-							일반직 계		603	-						
4급		1	1							4급		1	1						
4급~5급		3	2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58	-							6급 이하 계		565	-						
별정직 계		3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관		-							
연구사		2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관		-							
지도사		25	-							지도사		25	-						

하 동 군 공 보

(17) 제 433 호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6조 관련)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6조 관련)							
관 리 기관별	부서명	구 분		정원 (명)	존속 기한	비고	관 리 기관별	부서명	구 분		정원 (명)	존속 기한	비고
		직종	직급						직종	직급			
계	-	-	-	2	-	-							
본청	남해안 개발과	일반직	5급	1	2015. 6. 30.	6급 정원 환원	본청	<u>산단</u> <u>조성과</u>	일반직	5급	1	<u>2018.</u> <u>6. 30.</u>	6급 정원 환원
	<u>규제</u> <u>개혁</u> <u>추진단</u>	일반직	6급	1	<u>2015.</u> <u>6.30</u>	7급 정원 환원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5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73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적재정량”을 “최대적재량”으로 한다.

제3조 중 “2011. 1. 1이후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을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중 “100분의 50으로 하여 2014년 12월 31일”을 “100분의 25로 하여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중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수산물가공품의”를 “자금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가공품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물가공품의”를 “자금 지원을 받아 수산물가공품의”로 한다.

제9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 중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을 “제1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48조”를 “제12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 동 군 공 보

(22) 제 433 호

제7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생략)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물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동을 하려는 자

제9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6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제7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

 -----**2016년 12월 31일**

1. (현행과 같음)
2. ----- **자**
3. ----- **금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가공품의** -----
- **자금을 받아 수산물가공품의** -----

제9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

 -----**2016년 12월 31일**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6조(감면 신청) ① -----

 ----- **제126조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

 ----- **제127조**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5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74호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동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하동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살과사업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2. 읍면 : 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하 동 군 공 보

(24) 제 433 호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계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이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별표]

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6조 관련)

규 격	모 양
가로 2.7cm 세로 3.0cm	 <p> 0000 발행번호  군 마크 하 동 군 000원 증지 금액 0000.00.00 발행일자 0000 계기고유번호 서류발행일: 0000년00월00일 </p>

(26) 제 433 호

[별지 서식]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담당부서 :
 담당자 :
 기기번호 :
 정산일자 :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단위 : 매, 원)

증명서 종류	금액	금일발행(A)		금일결손(B)		금일실발행(A-B)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일 계							
누 계							

※ 당일의 수입내역은 통합관리기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출력물을 첨부하여 작성할 수 있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5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75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2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하 동 군 공 보

(28) 제 433 호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에서 징수한 수수료(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 수입금)의 매년 100분의10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 금액. 단, 조성기간은 폐기물처리장에 쓰레기 반입기간까지로 한다.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 한다.
-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 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가 된다.
-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선진지 견학 및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⑥ 기금의 회계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6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지원협의체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추천한 마을별 주민대표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면장 및 업무담당과장
4.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 ② 지원협의체의 운영은 영 제18조에 따른다.
- ③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과장
 2.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
 3.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
 4. 주민대표 또는 지원협의체 위원
 5.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⑤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등) ① 기금의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직접·간접)에 대하여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동사업형태의 지원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간접 영향권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금은 주변영향지역(직접·간접)의 영향 또는 피해정도 등 환경상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제6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직접·간접) 주민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행할 수 있다.
- ⑤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하 동 군 공 보

(30) 제 433 호

제9조(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8조와는 별도로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개발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시행하되, 시행시기·대상사업 및 사업비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이하 "감시요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감시요원에게 폐기물 반입·처리과정을 감시 및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시요원의 근무관리는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하며,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감시요원은 필요시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⑤ 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폐기물처리장내 쓰레기 반입기간까지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8조 관련)

구 분	사업의 종류
공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 · 그 밖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 사업
가구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료, 의료비, 통신료, 난방비(난방유 등), 상하수도사용료, 건강검진비, 가전제품구입비 · 그 밖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 사업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5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30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본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과·단장의 직급)”을 “(실·과장의 직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남해안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를 “산단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실·과·단장의 사무분장)”을 “(실·과장의 사무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한) 제3조 및 제4조의 산단조성과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기획감사 실장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2 실과단소 업무의 기획 조정
	3 중장기 계획 및 조정
	4 군정업무 주요업무 확인평가
	5 군수공약 사항 및 지시사항 총괄관리
	6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상 시상
	7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8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9 외국인 정책 및 통계, 등록
	10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11 군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나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집행 결정
	4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설계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총괄추진
	5 전시 지방행정 동원계획 수립시행
	6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7 국고예산확보 및 보조금 관리 총괄
	8 지방기금 운영 총괄
	9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상환업무 총괄
	다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2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3 공무원 비위 예방대책과 비위조사·처리
	4 주민 감사 청구제 운영
	5 군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임명제도 운영
	6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7 계약심사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1 홍보 계획 수립
	2 군정홍보 및 보도
	3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4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
	5 전시 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하 동 군 공 보

(34) 제 433 호

실과명	분장사무	
기획감사 실장	<u>마</u>	<u>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u>
	1	<u>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개정, 폐지</u>
	2	<u>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소청에 관한 사항</u>
	3	<u>행정절차제도 운영</u>
	4	<u>각종 규제의 개혁 및 관리</u>
	5	<u>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u>
	<u>바</u>	<u>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u>
	1	<u>공모사업 총괄추진</u>
	2	<u>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u>
	3	<u>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u>
4	<u>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u>	
5	<u>창조지역사업 신청 및 관리</u>	

실과명	분장사무	
문화관광 실장	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	지방문화예술 진흥
	2	문화예술분야 지도 육성 및 관리
	3	문화원 운영 지도 감독
	4	전시문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 지원 및 인쇄소·출판사 관리
	6	공연장 등록 관리
	7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사업추진
	나	문화재에 관한 사항
	1	문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도
	3	국·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사업
	5	천연기념물(동물)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
	다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1	관광개발 계획수립 및 시행
	2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4	관광지 지정 및 개발
	라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1	관광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안내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4	관광여행업, 관광숙박업 등록 및 관리
	5	관광상품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6	공동브랜드 관리
	라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
	4	삼성궁, 천제당 운영 및 관리
	5	지리산역사관 및 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6	최참판댁 운영 및 관리	

하 동 군 공 보

(36) 제 433 호

실과명	분장사무	
안전총괄 과장	가	안전·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	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 업무
	2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관리
	3	특별사업경찰 업무 지원
	4	각종 재난상황 관리(보고 및 초동대응)
	5	안전·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운영
	6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나	민방위비상대책 및 120만원 기동대에 관한 사항
	1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2	비상대비 업무
	3	전시 병력동원업무 지원
	4	예비군 육성 지원
	5	사회복무요원 관리
	6	농어촌 기로·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다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1	지역방재 계획 수립
	2	자연재난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3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추진
	4	재해위험지 조사 및 방재시설물 점검 및 관리
	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	재해 사전대비 업무
	7	풍수해 보험 업무
	라	하천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하천 정비·유지관리
	2	기성제 정비 및 하도개선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4	국가하천구역 편입 토지 보상
	5	골재 채취업 등록 및 관리
	6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7	공유수면(내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항

실과명	분장사무	
경제수산 과장	가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대책
	2	시장개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실업자대책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4	공산품 품질관리 및 물가관리
	5	지식재산권 업무
	6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에너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
	2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세부계획 수립
	3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술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 수립
	4	승강기 및 계량기 업무
	5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관련 업무
	6	전원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다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업활동 규제 완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장설립 승인, 등록, 변경, 창업승인 및 사후관리
	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라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	해양관광개발 사업 및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가어항 및 다기능 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가마리나 개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유수면(해면) 관리에 관한 업무
	5	수산행정 업무의 기획조정 및 총괄
	6	어촌종합개발사업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무
	7	연안정비 사업 계획 수립 및 연안오염 방지시설 사업
	8	어항시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9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어촌환경 개선
	마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2	해면어업 면허 및 관리
	3	수산증식사업 및 사후관리
	4	어업 피해예방 및 보상
	5	어선등록 및 관리
	6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7	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예방
	8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9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동 군 공 보

(38) 제 433 호

실과명	분장사무
주민복지 과장	가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평가
	2 기초생활보장지원업무 계획 수립 추진
	3 생업·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관리
	4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관리 및 지원
	5 지역사업의 개발·관리 시행
	6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8 종합사회복지관 총괄 및 시설관리
	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2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관리
	3 공공·민간기관 서비스연계 체계구축
	4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 구축 운영
	5 129희망콜(보건복지)센터 업무
	6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리
	7 불우이웃돕기(공동모금회 연계), 후원·결연 업무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선정, 자격관리, 근로능력판정에 관한사항 추진
	2 복지대상자 각 사업팀 보장 결정 요청
	3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4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관리 및 특별회계 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5 차상위 계층 및 사회취약 계층 지원 업무
	6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라 장애인복지,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1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4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5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6 장애인바우처 지원 사업
	7 자활프로그램 및 자활후견기관 관리
	8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9 사랑나눔미 빨래방 운영

실과명	분장사무	
주민복지 과장	마	노인복지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1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2	노인소득보장 및 취업기회 확충
	3	묘지설치 허가 및 분묘의 개장신고
	4	사랑의 주택 관리 및 실버식당 운영
	5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경로당 관리
	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7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관리 운영
	8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바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1	여성정책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2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및 지원
	3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대회 관련사항
	4	여성폭력예방 및 방지사업 추진
	5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6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지원 및 관리
	7	가족지원 및 건강가정지원 업무
	8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
	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하 동 군 공 보

(40) 제 433 호

실과명	분장사무
행정과장	가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교육
	2 호봉승급 및 호봉 재 확정
	3 공무원시험, 인사위원회 운영
	4 여론, 의전관리
	5 집단민원 총괄관리 및 행정구역 개편조정
	6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7 읍면 기능전환 계획수립 및 시행
	8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직제관리
	9 국가기반체계 보호
	10 전국 및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업무
	11 일제강점하 및 과거사 진상규명
	나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인구증대시책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1 복무, 보안, 공인관리
	2 주민자치,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선거관련 업무
	3 정부3.0업무
	4 적십자회비 모금
	5 직장동호회 운영
	6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7 사무위임 및 전결규정에 관한 사항
	8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0 직장금고 운영
	다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1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
	2 군민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 활성화 대책 추진
	3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운영
	4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주요서버 도입 및 운영
	5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
	6 회의실 방송장비 총괄 관리
	7 새올행정시스템 구축 운영
	8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및 운영
	9 IP전화시스템 관리 및 운영
	라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 범 군민 교육대책 운영
	2 초·중·고등 교육기관의 지원 활성화
	3 인재육성 장학재단
	4 특수대학(분교) 설립 육성
	5 교육환경 및 교육개발 기반개선
	6 평생학습관 설립 운영
	7 학교 기숙사·학원 설립 지원

실과명	분장사무	
행정과장	사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1	청소년 육성계획 및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민간청소년 수련시설 허가,등록 및 지도
	4	청소년 자립대책 및 모범청소년 발굴 포상
	5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6	청소년 보호법 관련 사무 추진
	7	요보호아동 후원자 결연사업 지도관리
	8	결식아동 보호지원
	9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원 및 관리
10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하 동 군 공 보

(42) 제 433 호

실과명	분장사무
민원과장	가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 민원안내 및 상담
	2 여권업무 및 민원행정시책 추진
	3 민원 서비스 혁신(G4C)운영
	4 민원(신고, 인·허가 등)접수 통제
	5 하동군민원조정위원회 관리
	6 고객만족도설문조사
	7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8 행정정보 공개운영 및 군정기록물 관리
	9 행정정보공동이용
	나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 관리 기획 및 조정
	2 지적 측량 검사
	3 KLIS 구축사업 기획·조정 업무
	4 도곽접합 등 도면 정비
	5 정밀한 연속도면 제작 추진
	6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권한부여 등 관리
	7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8 토지등록사항정정 관련 업무
	9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 공부정리
	1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다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재조사 사업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
	3 지리정보신규사업 타당성 및 연계성 검토 총괄
	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5 타 정보화사업과 GIS연계업무및 통합 D/B 지원
	6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7 지적공부세계측지계변환업무
	라 부동산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개별필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 업무
	2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 부동산 실거래 업무
	5 새주소 도로명 부여 및 관리
	6 공간정보사업
	7 토지거래허가 업무

실과명	분장사무	
재무과장	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	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대책 추진
	2	지방세 부과 및 과세결정
	3	은닉세원 조사 및 발굴
	4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5	지방세 구제업무
	6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나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1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2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3	공사 용역 계약 및 기타 계약관리
	4	공무원 급여 및 원천징수
	다	주택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	개별주택 가격조사 계획수립
	2	표준주택 가격에 관한 업무
	3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4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건축물, 선박·항공기) 부과
	5	지방세 세무조사 및 기타 지방세 부과
	라	세입 및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1	행정규제(관허사업 제한, 고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기타 행정규제)
	2	세외수입원 발굴 및 과징업무 지도감독
	3	국세 관리 및 이체
	4	금고관리 및 수납 대행점 관리
	5	세입정리 및 세입결산
	6	법원 경매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7	체납세 징수
	8	공매의뢰 및 체납처분
	9	결손처분
	마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1	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재물조사 실시
	2	청사·관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지도
	3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업무지도 감독
	4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잡종재산 관리
	5	도·군유 잡종재산 관리
	6	관용차량 관리
	7	물품출납, 보관 관리

하 동 군 공 보

(44) 제 433 호

실과명	분장사무	
산림녹지 과장	가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림조성 종합기획
	2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3	임업단체 육성 및 지도관리
	4	산림분야 중요업 등록업무
	5	산림분야 공모사업
	6	농림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7	임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지도감독
	8	공유림 관리에 관한 업무
	나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	산불방지 종합대책
	2	입목벌채 허가, 신고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예찰
	4	숲 가꾸기 사업
	5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6	임산물 굴·채취 허가 및 신고
	7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8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및 시행
	다	산림토목에 관한 사항
	1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산림입지 조사
	3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4	산림재해대책 및 복구
	5	임도시설 및 관리
	6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
	7	보안림 지정 및 관리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1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	수목원, 생태숲 조성 및 관리
	3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
	4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마	가로수,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공원조성 및 관리
	2	가로수 조성 및 관리
	3	자연공원(국립공원) 관련업무 전반
	4	도로변 꽃길 꽃동산 조성 및 관리
	5	군립공원 관리
	6	학교숲 조성 업무

실과명	분장사무	
건설교통 과장	가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도로교통량 조사
	2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5	도서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6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용도 폐지
	7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
	8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
	9	국도, 지방도사업, 소규모사업 보상관련업무 일체
	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	농업기반 조성 종합 기획·조정
	2	경지정리 사업
	3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4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5	농지개량사업 시행 인가
	6	정주권 개발사업
	7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8	농림사업 보상관련업무 일체
	다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및 정비
	2	도로공사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3	접도구역 관리
	4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단속
	5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6	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7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9	도로 설해대책
	10	관내 도로 교량관리
	11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관련업무 일체
	라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교통행정 종합기획·조정
	2	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및 지도감독
	3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지도감독
	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6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하 동 군 공 보

(46) 제 433 호

실과명	분장사무	
국제통상 과장	가	농·특산물의 통상유통에 관한 사항
	1	농산물 국내유통 관련 전반
	2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3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4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5	농특산물의 쇼핑몰 및 각종 판매장 운영
	6	특산물의 마케팅 지원
	나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	외자 및 국내 기업유치 활동
	2	투자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 운영 지원
	4	투자유치 타깃기업 관리
	5	개발 투자자 발굴 및 유치
	다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1	자원봉사 계획수립 및 시행
	2	자원봉사활동 개발 및 운영
	3	각종 사회봉사단체 관리 및 지원
	4	주민소득 지원
	5	대내외 교류 협력업무
	6	자매결연 총괄 계획 및 추진
	라	하동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	하동 녹차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2	공동 포장재 지원사업 및 품질개선 등 경상사업
	3	녹차산업의 부가가치 증대계획 수립 시행
	4	녹차연구소 관련 업무·사업 지원 및 점검
	5	차 문화센터 관리운영

하 동 군 공 보

(47) 제 433 호

실과명	분장사무
환경보호 과장	가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수립, 기후변화, 생태에 관한 사항
	1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3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관련업무
	4 수변구역 관리 및 행위허가, 협의 업무
	5 일반 및 직접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6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
	7 개발관련 오염총량 협의 및 부하량 관리
	8 토양오염 유발시설 인허가 및 관리
	9 기후변화 대응 관련업무
	10 탄소포인트제 시행 및 평가
	11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
	12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업무
	13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14 녹색시범마을 육성 지원
	나 대기·폐수배출시설 관리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1 환경오염 근절대책 추진
	2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관리
	3 환경오염피해 발생 조정관련 업무
	4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5 생활, 건설 소음진동 규제관련 업무
	6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추진
	7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특정시설 설치신고
	8 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
	9 대기환경 규제 지역 지정 및 관리업무
	다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지도단속
	3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 지도단속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사후관리
	5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및 운영관리
	6 공중화장실 총괄 관리
	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전반
	2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
	3 소각시설 가동 및 유지관리
	4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5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6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하 동 군 공 보

(48) 제 433 호

실과명	분장사무	
도시건축 과장	가	도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온천에 관한 사항
	1	군 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
	2	도시계획 입안 시행
	3	시가지 및 도시구획 정리
	4	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5	도시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6	택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7	경전선 철도이설
	8	광역권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9	개발촉진지구 지정
	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1	군 계획시설 개설계획 수립 및 편입부지 보상
	2	군 계획시설 개설공사 시행 및 감독
	3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4	소도읍 육성 업무 및 섬진강체육공원 조성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다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빈집 정비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3	위법건축물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4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
	5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
	6	재해주택 관리
	7	주거복지(급여)에 관한 사항
	8	광고물 등 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
	9	경관개선사업 추진
	10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라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1	건축신고 및 허가업무
	2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업무
	3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4	건축물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
	5	건축물 대장정비 사업추진
	6	분양대상 건축물 분양승인
	마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1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2	농지전용허가·협의·변경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3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4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준공 후 수질검사

실과명	분장사무
산단조성 과장	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총괄 기획·조정
	2 남해안시대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3 남해안시대 관련 자료 수집 및 홍보물 제작
	4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동향관리 및 개별법 관련 업무 추진
	5 선벨트 남중권 프로젝트 기획 조정
	6 남해안시대 관련 해양개발사업 추진
	7 해양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1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2 대송산업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3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운영 및 관리
	4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 폐수) 사업 추진
	5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조성 및 관리
	다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 신도시 개발지구 지정
	2 갈사만 배후도시 개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7 공업지구 내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
	8 두우배후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9 금성조선농공단지 및 사후관리
	라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보상에 관한 사항
	1 경제자유구역개발 보상 업무 추진
	2 공공용지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3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보상민원 해결
	4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업무 추진

하 동 군 공 보

(50) 제 433 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군 본청의 실·과·단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실·과장 ----- ----- -----</p>
<p>제2조(직무) 실·과·단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2조(직무) 실·과장----- -----</p>
<p>제3조(실·과·단장의 직급)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 -----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남해안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p>	<p>제3조(실·과장의 직급) ----- ----- ----- ----- -----, 산단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p>
<p>제4조(실·과·단장의 사무분장) 실·과·단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p>	<p>제4조(실·과장의 사무분장) 실·과장----- -----</p>

하 동 군 공 보

(51) 제 433 호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하동군 본청 실·과·단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실과명	분장사무	
기획감사실장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	(생략)	~	(생략)	
	11	(생략)	11	(생략)	
	나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라	(생략)	
		(신설)	마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개정, 폐지	
			2	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소청에 관한 사항	
			3	행정절차제도 운영	
			4	각종 규제의 개혁 및 관리	
		(신설)	5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바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실장	(생략)	1	공모사업 총괄추진	
~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도시건축과장	(생략)	3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5	창조지역사업 신청 및 관리		
		문화관광실장	(생략)		
		~			
		도시건축과장	(생략)		

하 동 군 공 보

(52) 제 433 호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하동군 본청 실·과 단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실과명	분장사무
남해안개발과장	가	남해안시대추진에 관한 사항	가
	1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총괄 기획·조정	1
	2	남해안시대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2
	3	남해안시대 관련 자료 수집 및 홍보물 제작	3
	4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동향관리 및 개별법 관련 업무 추진	4
	5	선벨트 남중권 프로젝트 기획 조정	5
	6	남해안시대 관련 해양개발사업 추진	6
	7	해양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7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나
	1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1
	2	대송산업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2
	3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운영 및 관리	3
	4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 폐수) 사업 추진	4
	4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조성 및 관리	4
	다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다
	1	신도시 개발지구 지정	1
	2	갈사만 배후도시 개발	2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4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4
	5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5
	6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6
	7	공업지구 내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	7
	8	두우배후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8
	9	금성조선농공단지 및 사후관리	9
	라	남해안보상에 관한 사항	라
	1	남해안시대 및 여수세계박람회, 경제자유구역개발 보상 업무 추진	1
	2	공공용지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2
	3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보상민원 해결	3
4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업무 추진	4	
가.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가.	삭제
1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개정, 폐지	1	삭제
2	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소청에 관한 사항	2	삭제
3	행정절차제도 운영	3	삭제
4	각종 규제의 개혁 및 관리	4	삭제
5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5	삭제
규제개혁 추진단		규제개혁 추진단 (삭제)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5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31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1명(5급)의 존속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54) 제 433 호

[별 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총 계			634	280	68	49	9	23	13	21	171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직	일반직 계		603	276	68	24	9	23	11	21	171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시설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		5	1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시설		4	3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하 동 군 공 보

(55) 제 433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6급 소계		158	81	12	7	2	3	2	7	44
	행정		13	12	1						
	세무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7	7							
	운전		4	2					1	1	
	행정·세무		12	5						1	6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9	10		3			1	1	14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5	14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3	2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4	2		0					2
	행정·세무·시설		3	2						1	
	행정·전산·농업		1	1							
	행정·전산·시설		3	2						1	
	행정·전산·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4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시설·환경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사무운영		2							1	1	

하 동 군 공 보

(56) 제 433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7급 소계		182	81	19	7	3	5	5	9	53
	행정		22	15			1		3	1	2
	세무		2	2							
	전산		2	2							
	사회복지		8	2						1	5
	숙기		2						2		
	공업		3	2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4	4							
	시설		15	8				2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운전		11	2	2					2	5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7	4						2	11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통신운영		1							1		
사무운영		3					1			2	

하 동 군 공 보

(57) 제 433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u>147</u>	63	<u>33</u>	4	2		2	3	40
	행정	<u>15</u>	8					2		<u>5</u>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3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2	2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u>보건진료</u>	<u>5</u>		<u>5</u>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9	5							4
	시설관리	3	3							
	운전	7	1		1					5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13	5		1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시설	5	4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4	4							
	행정·보건·간호	4		4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보건·간호·의료	2		2						
<u>사무운영</u>	<u>1</u>	1								

하 동 군 공 보

(58) 제 433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사 업소			
일 반 직	9급 소계	78	36	2	2	1	14		1	22
	행정	5	4				1			
	사회복지	17	7							10
	환경	2	2							
	공업	7					7			
	해양수산	1	1							
	보건	4					4			
	운전	3	1							2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6	2						1	3
	행정·농업	4	2							2
	행정·시설	11	10			1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화공운영	1						1			

하 동 군 공 보

(59) 제 433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상하수도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별 정 직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직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직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하 동 군 공 보

(60) 제 433 호

신 · 구조 대문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총 계		627	274	67	49	9	23	13	21	171		총 계		634	280	68	49	9	23	13	21	171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정무직		1	1										
일반직	일반직 계		596	270	67	24	9	23	11	21	171	일반직	일반직 계		603	276	68	24	9	23	11	21	171			
	4급 소계		1	1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시설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시설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행정		3	2							1			
	의무		1		1								의무		1		1									
	시설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		5	1							4		행정·농업		5	1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시설		4	3		1							행정·시설		4	3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2	농업·지도관		2			2							

하 동 군 공 보

(61) 제 433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읍	면	
					사 업 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인 반 직	6급 소계		157	80	12	7	2	3	2	7	44
	행정		13	12	1						
	세무		1	1							
	농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7	7							
	운전		4	2					1	1	
	행정·세무		12	5						1	6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9	10		3			1	1	14
	행정·농지		3								3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4	13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농지		3	2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4	2		0					2
	행정·세무·시설		3	2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농업·농지		3	1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4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시설·환경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농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사무운영		2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읍	면	
					사 업 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인 반 직	6급 소계		158	81	12	7	2	3	2	7	44
	행정		13	12	1						
	세무		1	1							
	농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7	7							
	운전		4	2					1	1	
	행정·세무		12	5						1	6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9	10		3			1	1	14
	행정·농지		3								3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5	14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농지		3	2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4	2		0					2
	행정·세무·시설		3	2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농업·농지		3	1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4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시설·환경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농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사무운영		2							1	1

하 동 군 공 보

(62) 제 433 호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일 반 직	7급 소계	182	81	19	7	3	5	5	9	53	
	행정	22	15			1		3	1	2	
	세무	2	2								
	전산	2	2								
	사회복지	8	2						1	5	
	속기	2						2			
	공업	3	2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4	4								
	시설	15	8			2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운전	12	3	2				2	5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17	4					2	11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통신운영	1								1		
사무운영	3					1			2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일 반 직	7급 소계	182	81	19	7	3	5	5	9	53	
	행정	22	15			1		3	1	2	
	세무	2	2								
	전산	2	2								
	사회복지	8	2						1	5	
	속기	2						2			
	공업	3	2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4	4								
	시설	15	8			2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운전	11	2	2						2	5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7	4					2	11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통신운영	1								1		
사무운영	3					1			2		

하 동 군 공 보

(63) 제 433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체육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146	63	32	4	2		2	3	40
	행정		14	8					2		4
	세무		1	1						1	3
	사회복지		6	2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2	2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4		4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9	5							4
	시설관리		3	3							
	운전		7	1		1					5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13	5		1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시설		5	4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4	4							
	행정·보건·간호		4		4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보건·간호·의료		2		2							
사무운영		2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체육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147	63	33	4	2		2	3	40
	행정		15	8					2		5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3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2	2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9	5							4
	시설관리		3	3							
	운전		7	1		1					5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13	5		1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시설		5	4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4	4							
	행정·보건·간호		4		4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행정·공업·시설		5	4			1					
보건·간호·의료		2		2							
사무운영		1	1								

하 동 군 공 보

(64) 제 433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신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 직	9급 소계	73	31	2	2	1	14		1	22
	행정	3	2				1			
	사회복지	16	6							10
	환경	2	2							
	공업	7					7			
	해양수산	1	1							
	보건	4					4			
	운전	3	1							2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6	2						1	3
	행정·농업	4	2							2
	행정·시설	9	8			1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화공운영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신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 직	<u>9급 소계</u>	<u>78</u>	<u>36</u>	2	2	1	14		1	22
	<u>행정</u>	<u>5</u>	<u>4</u>				1			
	<u>사회복지</u>	<u>17</u>	<u>7</u>							10
	환경	2	2							
	공업	7					7			
	해양수산	1	1							
	보건	4					4			
	운전	3	1							2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6	2						1	3
	행정·농업	4	2							2
	<u>행정·시설</u>	<u>11</u>	<u>10</u>			1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화공운영	1					1				

하동군 고시 제2015-44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93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6. 24.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420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6.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66) 제 433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592-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420	20150624	20070618	도시시점이악양중심으로부 터서쪽에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614-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회남재로 282	20150624	20070618	악양면 등촌리에서 청암 면 목계리로 넘어가는 회 남재라는 고개이름에서 도 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1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74-16	20150624	20070618	선돌이 있어 입석이 되어 버린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항리 432-1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무능골길 133	20150624	20080402	계곡이 깊고 경관이 아름 다워 중국의 무릉도화에 비유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467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소량산길 8-1	20150624	20090302	소량산이라는 지명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70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안길 46	20150624	20090302	위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366-5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423-6	20150624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도가 청학동으로 가 는 도로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79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780-13	20150624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79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798	20110729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451-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769-68	20150624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1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곤북로 1054-13	20150624	20090702	사천시의 곤명면과 하동 군의 북천면의 첫자를 혼 용하여 곤북로 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800-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094-75	20150624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815-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094-68	20150624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